# 울 산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6구합241 국가유공자불인정상이결정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9. 29. 군에 입대하여 K-2 기지 제7항로 보안단 000대대 소속 가설계원으로 복무하던 중, 1966. 7. 8. 10:30경 K-2 기지 보급창 옥외창고에 있는 쇠파이프를 다른 대원들과 함께 어깨에 메고 공군 수송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 쇠파이프의 무게가 과중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쇠파이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K-2 기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귀대하여 1967. 9.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과 척추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0. 9. 28. 열린 보훈심사회의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입은 우측 제4늑골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 협착증 등은 원고가 전역한 후 약 37년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단된 내용으로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제4늑골 골절에 한하여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추간판탈출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위 늑골 골절이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에 대하여 우측 제4늑골 골절 및 척추 부상(척추에 심한 충격으로 인한 파열)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4.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청 상이 중 우측 제4늑골 골절만이 국가유공자 요 건에 해당하고 척추 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이 사건 상이의 진단 경과
-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K-2 기지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 작성된 병상일지 등은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고, 1969. 8. 17. 감찰장교가 작성한 지상사고 보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4늑골(1대)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원고는 2006. 7. 21. 000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요추 3-4번간 경도의 전 방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등을 진단받았고, 2010. 5. 6. C에서 MRI 검사 결과 '요추 3-4번간 전방전위증의 악화, 추간판탈출증, 좌측, 파열상(상방 이동) 및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도' 등을 진단받았다.
  - 2) 의학적 소견(D 부속 00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가) 2006. 7. 21.자 000병원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의 변화

소견, 즉 인대나 근육의 손상, 조직 내의 출혈 혹은 부종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 나) 2010. 5. 6.자 C의 검사 결과에서는 위 2006. 7. 21.자 검사 결과에서 보이지 않던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 다)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의 원인분류로는 외상이 60%,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변화로 인하여 수핵이 굳어지고,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요추부에 부담이 가해지면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찢고 나와서 신경근조직을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 라) 이 사건 사고 시점과 이 사건 상이가 처음으로 확진된 시점인 2006년과는 약 40년의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병명은 우측 제4번 늑골 골절이므로, 흉부에 속하는 4번 늑골과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요추 3-4번, 4-5번과는 신체적으로 거리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요추부에 충격을 받았을 수있으나, 그러한 충격에서 회복이 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D 부속 00백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파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

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가 K-2 기지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 작성된 병상일지 등 이 사건 사 고 직후의 원고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오 히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달 후에 작성된 지상사고 보고서에는 워고의 상병 으로 '우측 제4늑골 골절 1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40년 이상이 지난 2006. 7. 21.경(요추 4-5번간) 및 2010. 5. 6.경(요추 3-4번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이를 확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확진 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 사건 상이가 발견 되기까지 4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충격에서 충분히 회복되었을 것으 로 보이고, 2006. 7. 21.자 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요추부에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 은 것도 이러한 원고의 회복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확진받을 당시에 이미 60세를 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⑤ 이 법정에서 증인 E은 "자신 은 원고가 K-2 기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병문안을 수시로 다녔는데, 그때 원고로부 터 '허리 쪽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허리가 구부

러지고 잘 걸어다니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증인 F은 "원고가 K-2 기지 병원에 입원하고 며칠 뒤에 늑골과 허리를 다쳤다는 검사결과를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 증언을 하였으나,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둔부통 및 하지의 방사통 혹은 하지의 저림증이고, 장기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거나, 허리가 구부러지고 잘 걸어다니지 못하는 증상은 추간판탈출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이 사건 사고 이후에 호소한 허리 통증이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원고의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정우철

판사 권순범

별지

### 관계 법 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G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 급으로 판정된 사람

-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 [별표 1]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및 범위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G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것
  -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끝